

의안번호	2205719
의 퇴 인	윤준병 의원
회 답 일	2024.12.12.
추 계 번호	24C5380
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장애인 ombudsman을 설치·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175억 1,700만원(연평균 35억 300만원)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장애인 ombudsman의 설치·운영	3,389	3,399	3,486	3,575	3,668	17,517	3,503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8조의2(장애인 ombudsman의 설치)	(제1항)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영향을 주는 기존규제의 정비 및 장애인의 활동·생활면에서 겪는 차별 또는 애로사항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장애인 ombudsman을 둠 (제3항) 장애인 ombudsman은 장애인 정책 또는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함 (제8항) 장애인 ombudsman의 업무처리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사무기구를 둠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8조의2(장애인 옴부즈만의 설치)	○	○ 최근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에 따라 장애인 옴부즈만을 위촉하고 사무기구를 설치·운영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장애인 옴부즈만에 대한 회의 참석수당¹⁾과 사무기구의 인건비, 운영비, 자산취득비이며, 유사사례인 중소벤처기업부의 “중소기업 옴부즈만”²⁾을 준용하여 추계
 - 중소벤처기업부는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추천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명의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위촉
 -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처리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사무기구를 설치·운영하고 있음(2024년 예산 31억 3,200만원)
 - －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설명자료를 준용하여 1명의 장애인 옴부즈만을 위촉하고 16명의 전문위원을 두는 것으로 가정
- 장애인 옴부즈만의 행정적 운영지원은 현재 장애인복지를 지원하는 부서에서 담당하고, 추가적인 조직 및 인력의 확대는 없는 것으로 가정

1)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2조에 따라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·중견기업 혁신활동을 위한 간담회 및 중소기업 현장 방문과 기업인 면담 등을 수행하므로, 해당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

2)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기존 규제의 정비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국무총리가 위촉한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독립적인 규제개선 활동 지원사업들을 운영

- 추계기간 중 해당 사무기구의 전문위원 인건비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명목임금상승률³⁾을 적용하고 운영비, 자산취득비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⁴⁾을 적용
-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옴부즈만을 위촉하고, 장애인 옴부즈만의 업무처리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사무기구를 설치·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유사사례인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동일한 규모로 장애인 옴부즈만을 위촉하고 사무기구를 설치·운영하는 것으로 가정
 - 유사사례의 회의 참석수당 단가, 배치인력, 인건비, 운영비 등을 준용하여 추계

가. 회의 참석수당

- 개정안에 따라 장애인 옴부즈만을 위촉하고,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향후 추계기간 동안 총 9,6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
 - 위촉 장애인 옴부즈만은 1명으로 가정하고, 회의 참석수당 단가는 40만원 (참석비, 교통비, 식비 등 포함), 회의 개최 횟수는 연 48회로 가정
 - 기획재정부의 「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」의 국가업무 조력자 사례금 단가를 적용하되,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

3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

(2024.10. 기준, 단위: %)

구 분	2025	2026	2027	2028	2029	2030
명목임금상승률	3.6	3.9	3.8	3.8	3.8	3.8

4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

(2024.10. 기준, 단위: %)

구 분	2025	2026	2027	2028	2029	2030
소비자물가상승률	2.1	2.0	2.0	2.0	2.0	2.0

[표 2] 장애인 옴부즈만 회의 참석수당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(단위: 백만원, 명, 회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	연평균
단가(A)	0.4	0.4	0.4	0.4	0.4	2	0.4
인원 수(B)	1	1	1	1	1	5	1
개최 횟수(C)	48	48	48	48	48	240	48
합 계(A×B×C)	19.2	19.2	19.2	19.2	19.2	96	19.2

주: 실제 위촉 장애인 옴부즈만 수 및 회의개최 횟수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액이 달라질 수 있음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나. 사무기구 설치

□ 개정안에 따라 사무기구를 설치·운영하는 경우 향후 5년간 총 174억 2,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

- 위촉된 장애인 옴부즈만 1명과 전문위원 16명으로 구성된 사무기구를 설치·운영하되, 지원 규모는 유사사례인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
 - (인건비) 유사사례의 전문위원 16명의 연간 인건비(2024년 기준 9억 6,400만원)에 국회예산정책처의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여 산출⁵⁾
 - (운영비) 유사사례의 운영비(2024년 기준 21억 6,800만원)에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여 산출
 - (자산취득비) 사무기구 설치에 따른 배치인력 총 17명에 대한 자산취득비가 추계 연도 첫 해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고, 1인당 자산취득비는 국회예산정책처의 「법안비용추계에 이용되는 단가 및 기준정보에 관한 연구」(2020)에서 조사된 비용(420만원, 정부부처 기준)에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여 산출

[표 3] 장애인 옴부즈만 사무기구 설치·운영: 2026~2030년
(단위: 명, 백만원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	연평균
인건비(A)	1,038	1,077	1,118	1,160	1,205	5,598	1,120
운영비(B)	2,258	2,303	2,349	2,396	2,444	11,750	2,350
자산취득비(C)	74	-	-	-	-	74	15
합 계(A+B+C)	3,370	3,380	3,467	3,556	3,649	17,422	3,485

주: 실제 사무기구 규모(배치인력 수, 인건비, 운영비 등)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액이 달라질 수 있음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5)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비상근·무보수인 위촉직이라는 점을 준용하여 본 추계의 장애인 옴부즈만도 회의 참석수당만 지급되는 것으로 가정

4. 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장애인 ombudsman을 설치·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175억 1,700만원(연평균 35억 300만원)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

[표 4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장애인 ombudsman의 설치·운영	3,389	3,399	3,486	3,575	3,668	17,517	3,503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실제 위촉 장애인 ombudsman 수 및 회의개최 횟수, 사무기구 규모(배치인력 수, 인건비, 운영비 등)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액이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강시온	이진우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강시온	02-6788-4742	sionkang@nabo.go.kr